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제12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9조

○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제2022-9호, 2022.4.14.)

□ 취학 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읍면동장)	국·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국·사립초⇒읍면동장)	취학 통지 (읍면동장⇒보호자)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읍면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 조사대상: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기준일 2023. 10. 1.)
-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3.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동장】: 2023. 10. 1.~12. 31.까지 (기한엄수)

- 조기입학: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3. 11. 30.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사립초 학교장→읍·면·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3.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보호자】: 2023.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동장→학교장】: 2023. 12. 20.까지 해당 학교 이송

○ **예비소집일**: 2024. 1. 2.(화) ~ 1. 5.(금) 사이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장(교육장)에게 통보

○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취학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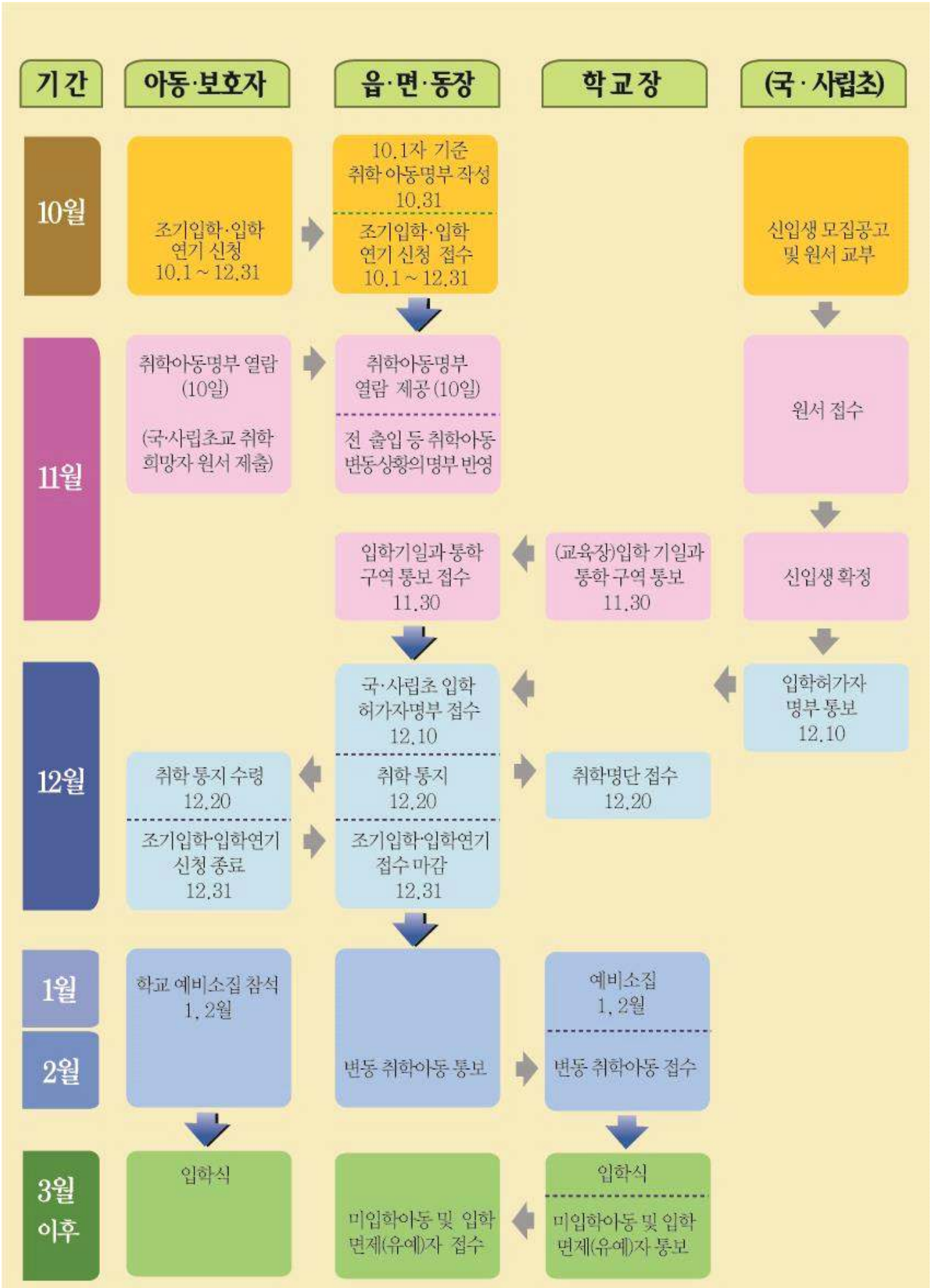
기간
아동·보호자
읍·면·동장
학교장
(국·사립초)
10월
조기입학·입학 연기 신청 10.1 ~ 12.31
10.1자 기준 취학 아동명부 작성 10.31
조기입학·입학 연기 신청 접수 10.1 ~ 12.31
신입생 모집공고 및 원서 교부
11월
취학아동명부 열람 (10일)
(국·사립초교 취학 희망자 원서 제출)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 (10일)
전 출입 등 취학아동 변동상황의명부 반영
원서 접수
입학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접수 11.30
(교육장)입학 기일과 통학 구역 통보 11.30
신입생 확정
12월
국·사립초 입학 허가자명부 접수 12.10
입학허가자 명부 통보 12.10
취학 통지 수령 12.20
취학 통지 12.20
취학명단 접수 12.20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종료 12.31
조기입학·입학연기 접수 마감 12.31
1월
2월
학교 예비소집 참석 1, 2월
변동 취학아동 통보
예비소집 1, 2월
변동 취학아동 접수
3월 이후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접수
입학식
미입학아동 및 입학 면제(유예)자 통보

학 부 모 유 의 사 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취학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출국 예정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연락처 사전 제출 등